

등록번호	교육지원과-2191
등록일자	2025. 2. 10.
결재일자	2025. 2. 10.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청소년팀 장	교육지원 과장			
		전결 2025. 2. 10.			
안다혜	이은정	장경원			
협조자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인천광역시서구
[교육지원과 청소년팀]

업 무 요 지

제 목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 추진개요

- 지원기간 : 2025년 2월 ~ 12월 *선정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 지원대상 : 9세 이상 ~ 24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 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 등 항목별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자별 지원 등 결정
- 선정방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 등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 향후계획

- 청소년 특별지원 집중신청기간 : 2025. 2. 24.(월) ~ 2025. 3. 7.(금)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및 통보 : 2025. 3. 31.(월) 한
- 청소년특별지원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 연중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계획(안)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법 및 제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II. 2024년 지원 실적

☐ 지원내역 ※2024년 지원 금액: 1인당 월 10만원

구분	생활 지원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	소계
인원(명)	14	1	4	2	3	19	43
횟수(회)	119	10	40	15	30	152	366
금액(천 원)	11,900	1,000	4,000	1,500	3,000	15,200	36,600

III. 2025년 지원 계획

- ☐ 지원기간 : 2025년 2월 ~ 12월
- ☐ 지원대상 : 9세 ~ 2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청소년 17명 이내
-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
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2025년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 지원종류 및 내용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 상한액 내에서 지원

지원 종류	생활 지원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법률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	기타 지원
지원금액 (상한액)	월65만원	연200만원	월15~30만원	월 36만원	연350만원	월 30만원 (심리검사비 40만원 별도)	월 30만원	타 지원 상한액 참조

☐ 2024년도 타구 청소년특별지원 현황

구분	지원 인원	예산 (천원)	지원금액(1인당 월 지원금액)					
			생활 지원	건강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
연수구	12	28,136	40만원	-	-	-	상담비별 지원	30만원
중구	13	45,039	40만원	-	-	30만원	-	20만원
동구	10	22,812	30만원	-	-	-	-	-
미추홀구	21	48,627	15만원 ~25만원	-	17.5만원	28.9만원	20만원	17.5만원
부평구	26	56,157	32만원	연 200만 원 이하	24만원 이하	29만원	24만원 이하	24만원
남동구	51	54,715	30만원	-	15만원 ~3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계양구	18	39,519	30만원 ~55만원	-	20만원	30만원	30만원	25만원
강화군	14	27,054	30만원	15만원	2.8만원	-	-	30만원
서구	43	39,887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 조사내용

- 총 9개의 군·구 중 서구의 청소년특별지원 1인당 월 급여액이 가장 낮으며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시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급여액에 대한 문의사항 다수 발생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 항목별(생활지원, 활동지원 등) 지원금액 증액 검토 필요함.
- 지원금액 증액시 지원인원 연 43명에서 연 17명으로 감소되나, 1인당 지원금액 확대로 위기청소년 및 보호자의 이용서비스(생계비, 학원비, 문화활동비 등)에 대한 자부담 감소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2025년 지원금액 증액(안)

연도	2024년	2025년
예산	39,887천원	41,391천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월 20만원
지원인원	연 43명 이내	연 17명 이내

□ 추진절차

①	발굴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시설, 학교 등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②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대상 여부(중복지원 여부, 위기사유 등) 사전 검토
③	대상자 조사	■ 보호자,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심의 및 결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결정 후 사후심의 가능 ※ 서면심의 가능
⑤	통보	■ 특별지원 대상자 통보 및 급여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 지급
⑥	사후관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 교육지원과: 소득 등 변동사항 관리

IV. 세부 추진계획

① 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보호자,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 집중신청기간 : 2025. 2. 24.(월) ~ 2025. 3. 7.(금)

※ 긴급 지원의 경우 연중 신청 가능,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

신청시 제외)

- 우선발굴 대상자 :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자살시도·가출·폭력피해·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하거나 갈등을 겪는 청소년, 기관 연계 청소년

② 대상자 조사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득기준 산정방법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2025년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 조사방법 :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 ※ 필요시 현장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징구
- 중복지원 조사 : 타법 및 제도에 의한 동일내용 중복지원 금지
 - 생활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 건강지원 중복 금지 : 의료급여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 학업지원 중복 금지 : 기초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자립지원 중복 금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정 밖, 범죄, 학업중단, 은둔 여부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 조사

[3]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일 시 : 2025. 3. 31. (월)한
- 방 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 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결정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 심의·결정

[4] 통보·지원

- 통보방법
 - (신청인) 지원여부, 금액 등 결정내용을 서면 통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를 위한 특별지원 신청서 사본 송부
-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지원의 경우 매월 지원금 정기적 지급
 - 가정상황이나 청소년 연령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계좌를 통한 입금 조치

5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관리」 항목 활용 지원내용 등 정보관리
- 대상자 자격 및 변경사항 관리(월 1회 이상)
-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 시 한 번, 연장 시 지원 자격 변동사항 반영 및 관리
- 사례관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 사례관리 실시
 - 지원기간 종료 후 상담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서비스 지속 유지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상한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등 기초생계비 나. 숙식제공	월 65만원 이하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학교의 압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교육비용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비용 (적성·흥미 검사,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15세 이상만 지원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1회 지원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비는 지원대상 아님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내용과 금액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V.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1,391천원(국 28,973 시 6,209 구 6,209)

※변경내시 1회 추경 반영 예정

☐ 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 특별지원, 301일반보전금, 01사회보장적수혜금

VI. 행정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적극적 홍보, 발굴 및 추천
: 2025. 2. 24.(월) ~ 2025. 3. 7.(금)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신규 신청자 소득·재산조사 및 결과 통보
: 2025. 2. 24.(월) ~ 2025. 3. 21.(금)

☐ (교육지원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2025. 3. 31.(월) 한

☐ (교육지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2025. 4. ~ 12.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				
수신처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소속기관/발굴자		(성명:)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기유형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해당 항목 모두 √ 표시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 보호자 보호 ☐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 가출청소년 ☐ 빈곤 ☐ 가정폭력(아동학대) ☐ (부모)정신과적 문제 ☐ 조손 · 한부모가정 ☐ 기타(구체적으로:)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기타(구체적으로:)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 재학생(학교/학년:)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초·중학교 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적·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장애·질환(구체적으로:)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 기타(구체적으로:)			
지 원 유 형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 기타(구체적으로:)			
종 합 소 견	☐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 ☐ 일반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소견 :			
위 대상 청소년의 위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 유)	학력·재학여 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 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⁷⁾	수급권자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3), 4) 해당자에 한함
5), 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8) 동일보장가구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족 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문서관리카드교육지원과-2191 13/14

(4쪽 중 3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 의 (√ 체 크)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u>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u>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u>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u>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u>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u>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u>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u>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 크)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7.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 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요금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7.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해 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9)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